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의주화

2023/ 7/ 5 통권 163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경제활동하는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비교>

개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자	자유직업사업자 (비등록자)	
개념구분	적극적 사업행위	사업자 등록 안함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행위
수입소득 거래증빙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통장 입금	소득지급자가 총지급 액의 3.3% 원천징수 후 지급	법인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통장 입금, 임직원은 급여를 받음
과세방법	1년 총이익에 소득세율 적용 (다단계누진세율)	1년 총소득에 다단계 누진세율 적용	매년 이익에서 기업대 표급여 공제 후 이익에 법인세율(2억까지 9%, 2억 초과 19%)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요건충족감면	중소기업 아님, 감면안됨	중소기업 가능, 감면가능
유튜버 활동	미디어창업 (인적, 물적시설 구비)	1인미디어창업자	법인통합수입, 개인급여지급
원천징수	없음(세금계산서 발행)	3.3%(주민번호)	없음(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지출	창업자 과세소득을 당년도 전액 지급	개인통장소득 (전액지급)	법인에서 대표급여(부 분 지급) + 향후 배당
선호상태	자기자금으로 시작	자금소요 없는 1인활동	외부출자자의 투자자금 모집 등
등기비용	없음	없음	3년에 30만원 내외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자료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상품권 할인 구입가로 직원에 급여 지급시 거래당사
자인 할인가로 적용해도 될 듯 하나 유권해석은 아님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 국세청 컨설팅으로, 기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
행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 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기 위해 받은 보상금은 열거된 수입사업소득 아님
(p.15)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사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0호 / 주간 27호

2023. 7. 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경제활동하는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비교	표지
긴급시사해설	상품권 할인 구입가로 직원에 급여 지급시 거래당시개인 할인가로 적용해도 될 듯 하나 유권해석은 아님	2
CEO에세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배당금 지급을 위한 분사차입 가능여부와 세무리스크 문의 - 재고자산 실사 후 정부 수량 및 실사재고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업체측에 손실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자산매각 -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기업별 투자 세액공제율 -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10 11
직장인 Survival	SMART 목표설정: 정의 및 개요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소득세제과-238, 2022.05.24) - 임대주택을 임대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1가구 평균 113만원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받은 보상금은 열거된 수입사업소득 아님	13
세무정보	- 국세청 컨설팅으로, 기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15 29 3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상품권 할인 구입가로 직원에 급여 지급시 거래당시 시가인 할인가로 적용해도 될 듯 하나 유권해석은 아님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 질문

직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회사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총 700명의 직원에게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6300만원에 구매하여 지급)

물품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구매 당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개인 누구에게나 상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1인당 월 150만원 한도)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매 당시 이전시점부터 현재까지 상품권의 10%를 할인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가서 상품권을 사도 1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9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법인이 구매해도 1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9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실 구매비용 9만원을 '지급당시의 시가'로 보아 직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총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액면가 10만원을 각 직원의 총급여에 산입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다음 해석으로 보면 상품권 할인구매가 9만원(액면 10만원)으로 계산 가능하나, 국세청의 구체적인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 소득, 원천세과-825. 2009. 10. 06

[요 지]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시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 의]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명절선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동 현물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물급여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회 신]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규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별도 시행규칙 없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란 게 있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다. 왕정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루이 14세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며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다.

국가재정은 말이 아니었다. 루이 16세 때 드디어 시민의 분노가 터졌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물정 모르는 말이 도화선이 됐다. 결국 그들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은 국민의 고탁을 느끼기 힘들다.

이러한 일이 광복 후 한국에도 있었다. 6·25 전쟁으로 국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이었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났다. 21세기 개명천지 자유·민주·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총리·장관·대법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이제 흔해빠진 일이 되었다. 현직 장관 중에서도 청문회 때 위장전입이 드러난 경우가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고 보면 위장전입 경험을 하지 않고는 국가 지도자를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가. 특권층과 서민은 원래 다른 모양이다.

한 기업 CEO의 특강이 있었다. 초청된 연사는 유통업계의 전문경영인 K부회장이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월급쟁이였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고생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보니 최고경영자에 올랐다고 했다. 그는 목표초과달성이라고 좋아했다. 특강참여 젊은이들 모두 재미있어 했다. 논어에서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사원은 사원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답도 있었다. 어떤 젊은이가 '오너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에 관해 질문했다.

연사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에 모셨던 오너들의 '돈 냄새 맡는 동물적 감각'에 대한 찬사도 있었다. 동물적 감각이라니. 그렇다면 '돈 냄새 맡는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란 뜻인가. 왕이 타고 난다는 것처럼. 아니다. 연사의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21세기의 '오너 신수설(Owner 神授說)'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샐러리 맨 신화'의 대명사인 힐라 그룹의 윤운수 회장은 2007년 전 세계 '힐라' 브랜드 사업권을 전격인수,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한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었다. 월급쟁이가 오너가 된 것이었다.

이처럼 오너는 절대 타고 나는 게 아니다. 또 오너의 비리를 전문가·월급쟁이들이 도와주는 시대도 벗어나야겠다. 의당 억지 쓰는 노동운동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참된 실용세계다. 바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중도 실용·통합의 기업철학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3일 (금)	6월 26일 (월)	6월 27일 (화)	6월 28일 (수)	6월 29일 (목)
미 달 러 (USD)	1291.40	1302.20	1303.80	1303.10	1304.30
일 본 엔 (JPY)	902.67	907.01	909.11	905.34	903.35
영 국 파 운 드 (GBP)	1646.15	1656.59	1657.59	1661.13	1648.64
캐 나 다 달 러 (CAD)	982.28	989.14	991.45	987.65	984.01
홍 콩 달 러 (HKD)	164.92	166.30	166.51	166.35	166.52
중 국 원 (CNH)	179.71	180.57	180.66	180.45	180.28
유 로 화 (EUR)	1414.79	1419.85	1422.45	1427.94	1423.84
호 주 달 러 (AUD)	873.12	869.93	870.48	870.80	861.03
싱 가 폴 달 러 (SGD)	960.29	963.13	963.32	965.72	964.2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7.66	278.46	278.98	279.28	279.20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본사차입 가능여부와 세무리스크 문의

Q 당사는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현시점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본사에서는 "단기차입을 해 줄테니 배당금 지급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거래형태(차입을 받아 배당지급)가 세무당국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인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세법에 근거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이율로 자금차입하면 차입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실사 후 장부 수량 및 실사재고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업체측에 손실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12월 말 기준 재고자산 실사 후 장부 수량 대비 실사재고 적은 것에 대해 매입처에 손실비 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23년 1월로 발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보상성격의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손해배상이나 보상성격의 대금청구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Q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직원이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을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는 2021.12.31 일자로 퇴사후(퇴직금 지급) 다시 2022. 1월에 재입사 해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A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인정이자율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31일 퇴사후 2022년1월1일에 재입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

Q 자산매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산 매각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를 확인 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월에 사고 익월에 바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달간격으로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A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Q D/B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서,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DB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이미 자산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액 초과 불입액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상담실 백종훈 차장

상품권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접대의 용도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적격증빙 구비방법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빙불비가 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46012-11220,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해야 함

현행 법인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즉,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거래에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권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상품권을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그 사용시점에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거래처 등에 직접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직접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구입시점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사금융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서면2팀-2664, 2006.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2009.1.1. 이후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기업별 투자 세액공제율

구분	대기업	중견	중기
국가전략기술	15	15	25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일반기술	3	7	12

화

국내외 콘텐츠 세액공제율 비교

구분	내용
한국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미국	미네소타주 : 25%, 지원 상한선 2500만달러 뉴욕주 : 30%, 관련 예산 7억달러로 증액 조지아주 : 30%, 지원 상한선 없음
영국	내년 4월부터 25% → 34% 확대
스페인	해외 콘텐츠 30%, 국내 콘텐츠 25%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선증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50%)	과세표준 60억 이하: 10% 60억 초과: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20%) 이상 10년 보유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20%) 이상 10년 보유
사후 관리	기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 5년 평균 90% 유지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 거치 10년 납부) 적용	5년 적용



해외투자 ETF 세금 비교

	국내 상장 해외ETF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세율	15.4%	22%
배당(분배)세율	15.4%	15.4%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
연간 손익 통산	×	○



SMART 목표설정 : 정의 및 개요

SMART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약어는 특정,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및 시간 제한을 나타냅니다.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ttainable (현실적인 목표를 의미)

Relevant (관련성)

Time-bound (날짜 지정)

SMART 목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성, 초점 및 동기를 부여합니다.

SMART 목표를 만드는 방법

다음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생성, 개발 및 달성하는 단계입니다.

1. 구체적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합니다.
2. 측정 가능 :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집중력을 유지하고 마감일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달성 가능 :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제한되어서는 안되지만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4. 관련성 : 목표가 자신에게 중요하고 다른 목표 및 조직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Time-bound : SMART 목표가 일상적인 요구에 빠지지 않도록 목표 날짜를 지정하십시오.

기업에서 관리자가, 또는 개인의 자기계발 관점에서 뚜렷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SMART 목표는 실행 가능한 작업에 명확성, 집중 및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신 판례 예규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 시기

소득세제과-238, 2022.05.24

질 의

-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 신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492, 2022.08.11

질 의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 변경이 발생함

질의

- 집합투자증권이 매도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받은 보상금은 열거된 수입사업소득 아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제과-343, 2022.08.29

질 의

-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질 의

-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2) 및 상증령 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 16②(2)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임대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질 의

- 소득령 §155<20>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①(II)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소득령 §155<23>(I)의 “임대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1가구 평균 113만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추경호 “올해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중견기업들 적극 투자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견 기업인들 만나 세제 혜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올해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추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양적인 고용 상황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 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투자하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과 관련해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계적으로 금융 상황도 변동성이 여전하고 그 다음에 경기 측면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평가하며 “가만히 앉아서 세상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남보다 더 빨리 열심히 달려야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희망의 빛을 빨리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에서도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중견 기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힘내 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내수 활성화·원활한 인력 확보·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매입자 계산서 발행제도 시행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는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 국세청 2023. 6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개요

-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 * ('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500억 원 →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 그러나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 '22.8월) 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37.6%),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31.6%) 順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2 지난해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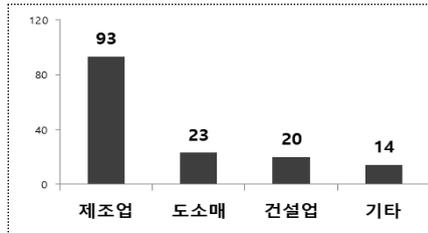
- (대상자 선정)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50(개)	24	22	25	11	14	3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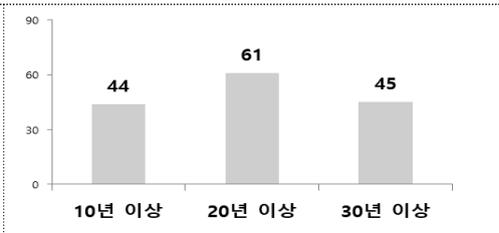
*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81.3%)이, 사후관리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93.3%)이 많았으며,
 -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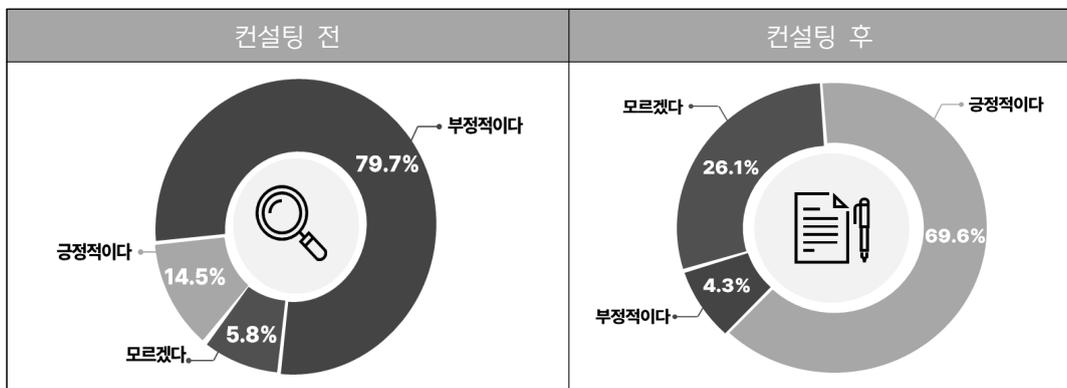
〈사업영위 기간별〉



- (컨설팅 실시)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한 결과,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가능성 긍정 답변 비율 : 컨설팅 전(14.5%) → 컨설팅 후(69.6%)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주요사례)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구체적 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컨설팅

-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생산시설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

사례①

기업자산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

- ◆ (자문)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 (진단)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기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 *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 ◆ (컨설팅)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기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 ☞ “기업을 키워서 언젠가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주)○○전자 사례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 권유

사례②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국내로 이전하세요

- ◆ (자문)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하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 ◆ (진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컨설팅)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녀와 협의할 것을 권유
 - ☞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는 ○○무역(주) 사례

-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

사례③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업종간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

- ◆ (자문)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 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 ◆ (진단)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기업승계 세 제혜택 가능
- ◆ (컨설팅) 향후 제조 매출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기업영위기간이 단 절되므로,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
☞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주)○○약품 사례

기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컨설팅

- 기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 반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권유

사례④

기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

- ◆ (자문) 30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경영 경협 이 부족해父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진단) 기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우려 있음
- ◆ (컨설팅) 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子和 공동경영 권유 →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 “아들에게 기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 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주)○○자재 사례



3 2023년 컨설팅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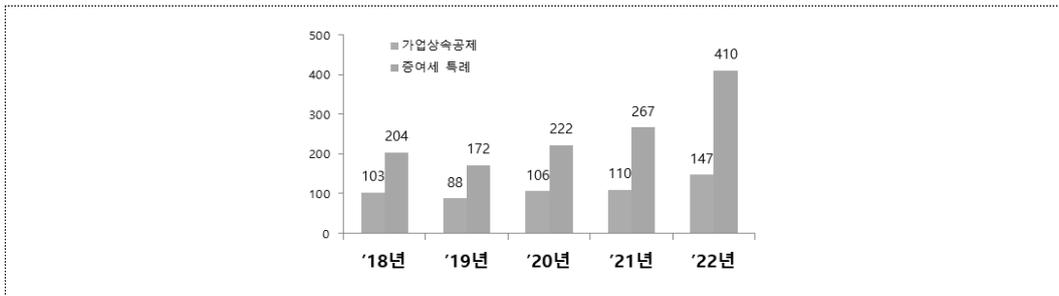
1 컨설팅 대상인원을 확대합니다.

-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21년 110명 → '22년 147명(33.6%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21년 267명 → '22년 410명(53.6% ↑)

<가업승계제도 이용실적(명)>



- 아울러,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했던 기업인 중 일부를 선정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 지난해 국세청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제 아래 컨설팅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단순하게 선정한 측면이 있었으나,
-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명문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기업상속 및 기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3 기업이 원하는 경우 컨설팅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지난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23.8.31. 기간이 종료됩니다.
- 그러나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기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 부족하고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기업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컨설팅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입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23. 7. 1. ~ 7. 31.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3.9.1.부터 기업승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컨설팅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참조 [참고]

4 각종 도움자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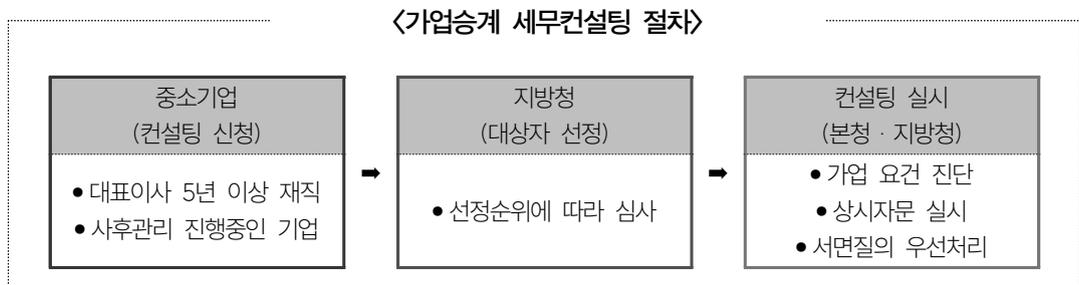
- 국세청은 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기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기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 (안내책자 개편) 기존의 제도설명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묻는 사안을 「쟁점별 문답자료」와 「사례별 세액계산방법」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더

-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업승계 요건 검토표」를 제공하여 간단한 부분은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4).
 - (리플릿·동영상 최초제작)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컨설팅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세무서 민원실, 기업단체에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2).
 - 이와 함께,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를 동영상 3편(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23.6.20.).

5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다양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

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기간 및 방법)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3.7.1. ~ 7.31.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 [참고2]

※ '22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23년 신청자와 함께 심사

- (제출서류)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3]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23.8.31.까지 알려드립니다.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기업상속 및 기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참고 2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참고 3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서식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	⑥업태 · 종목
	⑦본점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컨설팅 유형	기업승계 사전요건 (), 기업승계 후 사후관리 ()
<p>상기와 같이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국세청장 귀하</p>		
<p>※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기업상속 및 기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div>		

-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하단 제출서류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참고 4 - 2023년 기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원 → 5천억 원 미만)	
공제(적용)한도 증가	기업영위기간	공제(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
피상속인(수증자)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 → 40%이상 (상장법인 30% → 20%이상) 10년 이상 보유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대표취임) 5년 → 3년 (대표 유지) 7년 → 5년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 모두 20년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기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	

참고 5 - 예상 질문 및 답변

1. 기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 기업상속공제란?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 ②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 개인기업. 법인기업 가능
-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
 - ③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①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
-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③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④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중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현도의 평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살아 생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습니다.

구분	증여공제	세율
일반적인 증여	5천만원	10~ 50%
증여세 과세특례	10억원	10~ 27%

☞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합니다.

- ① 70억원 이하 : (재산가액 - 10억원) x 10%

② 70억원 초과 : [(재산가액 - 70억원) x 20%]
+ (70억원 - 10억원) x 10%]

* 한도는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름(기업상속공제 참조)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 증여자(부외)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 ②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 수증자(13세 이상 자녀 요건)
 - 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3개월) 가업에 종사
 - ②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2.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 30년 이상 경영하고 기업재산이 600억 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기업상속공제 활용 시 세액비교

구분	일반 상속	기업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600억원	600억원
기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595억원	0원
세율	50%	-
산출세액	292억원	0

30년 이상 경영
기업재산 600억



약 292억원의 절세 효과 👍



02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세액비교

구분	일반 증여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600억원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과세표준	599억 5,000만원	590억원
세율	50%	10%(60억 초과분 20%)
산출세액	259억 1,500만원	112억원
신고세액공제	(8억 8,545만원)	-
자진납부세액	286억 2,955만원	112억원

10년 이상 경영
가업주식 600억



낮은 세율 적용
약 174억 2,955만원 세액 감소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 대상인원을 20%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지난해 150개 대비 20% 증가한 180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2023. 6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42)

-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예: '23. 7. 1. 거래의 경우 '24. 6. 30.까지 신청)
 -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개요

□ 도입취지

-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비용증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 소득세법 제163조의3 신설 (2022.12.31.)

□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

- ① (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② (신청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신청*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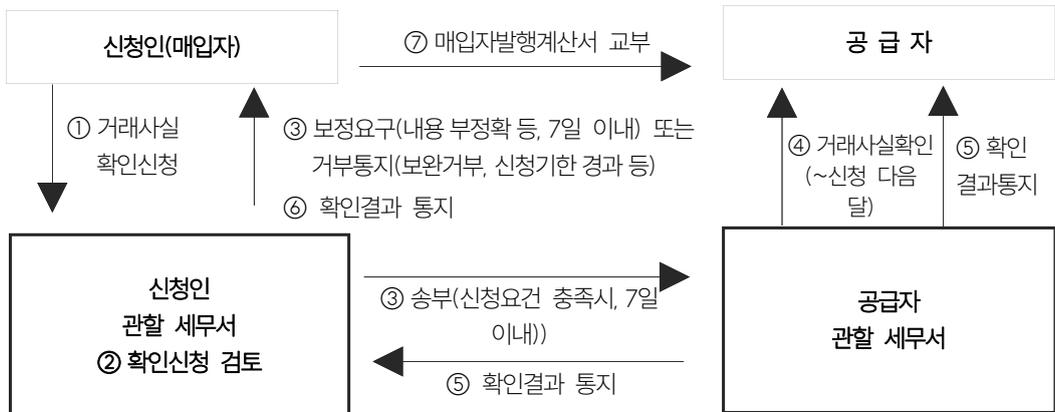
- ③ (거부통지) 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또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 또는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통지

- ④ (실거래 여부 확인)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결과 통지

- 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신청인)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절차 Ⅰ



- 시행시기 : 2023.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붙임 2 - 「매입자발행계산서」 관련 주요 Q&A

1. '23.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본인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공급자 관할세무서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 신설)

2. 거래사실 확인신청할 수 있는 거래대상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급가액 5만 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 23. 7. 1.인 경우

→ 공급시기(' 23. 7. 1.)가 속하는 과세기간(' 23. 1. 1. ~ ' 23. 12. 31.)의 종료일부터 6개월인 ' 24. 6. 30.이 신청기한임

<참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 26)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과 혈액
6. 교육 용역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
나. 석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 운송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9.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11. 금융·보험 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3.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6 서식)를 작성하여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홈택스*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매입자발행계산서' 검색

4. 거래사실 확인요청이 거부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 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신청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160의2③)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7. 거래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반드시 매입자 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 ☞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및 공급자 모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입자가 따로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사업자가 아닌 자나 농·어민과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나 비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2 제①항 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가산세 우려 없이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및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 문답

- 국세청, 2023. 6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

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종,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채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text{금융소득}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欸)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3. 의제배당(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
-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에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

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 이라함)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이라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22.0%	20.0%	15.0%	14%
(지방소득세율)	(2.2%)	(2%)	(1.5%)	(1.4%)

-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 납부, 835만원 수령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

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 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레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



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2.3.10.인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1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2.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19.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에금이 2022.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에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2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 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 = (8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 + (20,000,000 \times 14\%) \\
 & = (7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 = 12,756,000 + 2,800,000 = 15,556,000\text{원}
 \end{aligned}$$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text{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사례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text{원}$$

$$\bullet \text{Gross-up 금액} = 50,000,000 \times 11\% = 5,500,000\text{원}$$

$$\bullet \text{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text{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종합과세금액} + \text{Gross-up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2\text{천만원} \times 14\%)$$

$$= \{ (70,000,000 + 5,500,000 - 5,100,000) \times 24\% - 5,220,000 \} + 20,000,000 \times 14\%$$

$$= 11,676,000 + 2,800,000 = 14,476,000\text{원}$$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비영업대금이익} \times 25\%) + \{ (\text{그외 금융소득금액} \times 14\%)$
 $= (30,000,000 \times 25\%) + \{ (60,000,000 \times 14\%) = 15,900,000\text{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사례 3】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6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text{원}$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60,000,000 \times 14\%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times 15\% - 1,080,000) = 11,055,000\text{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1,000\text{만원} - 210\text{만원}(\text{소득공제})] \times 6\% = 474,000\text{원}$
 - ② $370\text{만원} \times 14\% = 518,000\text{원}$
 -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 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



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2011~2022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1.1.~2010.12.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배당가산액(Grosss-up 금액)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 ☞ 자세한 내용은 [7-2] 계산사례 참조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금융소득은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3.5.1.~2023.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만 가능)
 -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나요?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